

# 예 산 총 칙

2017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61,993,714	10,859,811
일반회계	272,607,400	8,178,222
특별회계	89,386,314	2,681,589
공기업특별회계	3,477,090	104,313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3,477,090	104,313
기타특별회계	85,909,224	2,577,27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353,559	370,60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08,554	18,257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42,617,316	1,278,519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8,059,608	241,788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223,000	96,690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1,675,000	50,25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8,508,719	255,262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943,468	28,304
의령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7,920,000	237,6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89,50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8,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